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272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영곤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 영등포구 C 대 499.2㎡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 10. 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나. 피고는 소외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8. 접수 제182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인데, D은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영등포구 C 대 4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남편이었던 피고와 2019. 10. 7.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만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명의인 E오피스텔 건물(지하 3층, 지상 7층, 옥탑층)이 있고 위 건물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 피고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사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익형 건물인 E오피스텔을 건축한 점, E오피스텔의 등기명의자는 피고인 점, 이 사건 토지에 E오피스텔이 공동담보이고 채무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재산형성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의 부동산사업에 이용하면서도 건물과 토지의 명의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 명의를 D 앞으로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D과 피고가 이혼하게 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E오피스텔의 명의인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등)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 토지 및 E오피스텔 각각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지상 E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와 D은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인 2019. 1. 29.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D은 그로부터 20여일 전인 2019. 1. 5. 서울 강남구 F 소재 아파트를 1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받았는데(금융거래내역상은 일부만이 확인된다), 위 매도시기 및 위 아파트의 가액, 이 사건 재산분할에서 D의 위 아파트 매매 및 대금수령을 문제삼거나 정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G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외에는 별다른 대출금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이러한 재정상황은 D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재산처분’을 할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을 제외하고도 남은 수억 원의 F 소재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분할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